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 - 25호

2015년도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경영·생산현장에 ICT를 접목하여 경영효율성 제고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 및 유출 방지 지원을 위해 『2015년도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1. 19

중소기업청장

Ⅰ. 경영혁신플랫폼구축사업

1. 사업 개요

○ 클라우드 컴퓨팅기반 저비용·고효율의 공동활용시스템(플랫폼) 및 솔루션을 구축·지원으로 중소기업은 전담인력, 유지비용, 기능 개선 등의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용

- **(기본형솔루션)** 금융, 매입·매출관리 등 경영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일반 업무 기능
- **(특화형솔루션)** 업종별 공동으로 사용가능 하도록 개발된 업무 기능

  * 특화형솔루션 : '13년 7개 업종, '14년 14개 업종

2. 지원 내용

○ **(기본형솔루션)** 금융관리, 수납지급관리, 매입·매출관리, 전자세금계산서, 부가세관리, 영업관리, 원산지증명 등의 업무 지원

※ 사용방법 : 경영혁신플랫폼 웹사이트 접속(www.smplatform.go.kr) → 회원가입 → 기본형솔루션 활용

○ **(특화형솔루션)** 업종별 협·단체 소속 회원사(중소기업)의 공동 활용이 가능한 업무용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

- 지원규모 : 7개 업종 내외
- 지원금액 : 정부지원 최대 2억원(개발비용 초과시 신청 협·단체 부담)
- 개발기간 : 최대 6개월 이내

3. 신청 자격 및 방법

○ 신청 자격

-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하는 협동조합(전국, 지방, 사업), 협동조합연합회(업종, 지역), 업종별 협회·사업자단체

  * 개인 또는 기업 단독 신청은 불가

○ 신청 기간 : 2015. 1. 19(월) 09:00 ~ **2. 16(월) 18:00**

○ 제출서류 : 경영혁신플랫폼 특화형솔루션 개발과제 신청서

○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신청 : 중소기업중앙회 조합진흥부에 이메일(bluemoon@kbiz.or.kr) 접수
- 문의 : (신청관련) 중소기업중앙회 조합진흥부(02-2124-3233)
  (사업관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컨텍센터(1644-1736)

4. 지원 규모(예산) : 14억원

5. 선정 및 개발 절차

< 특화형솔루션 개발과제 선정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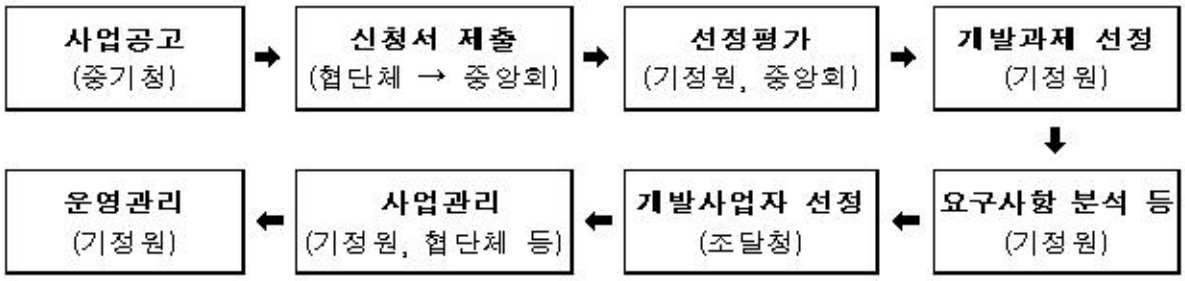

6. 지원 제외대상

○ '13 ~ '14년 개발과제로 선정된 협·단체는 신청 불가

○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경영혁신플랫폼과의 기술적 환경, 공고내용과 부합하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

붙임 : 1. 경영혁신플랫폼 특화형솔루션 개발과제 신청서
2. 경영혁신플랫폼 특화형솔루션 선정평가표

Ⅱ.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1. 사업 개요

○ 생산공정의 비효율적 요소 제거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별 맞춤형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생산관리 효율화 및 생산성 제고

○ FTA 확산 등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원산지정보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으로 업무 효율성 향상

2. 지원 내용

○ 제조현장 디지털화를 위한 생산설비정보시스템(POP, MES, CAPP, PDM, RFID/USN) 개발·구축 지원

○ 주조,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용접 등 6개 업종의 생산공정에 IT결합, 기술융합 등 新생산기법 확산 지원

○ 원산지증명(확인)시스템 도입 및 활용교육 등 지원

3. 지원 조건

○ (**신규과제**) 동 사업을 통해 정보시스템 구축 실적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 총 사업비의 50%, 최대 6천만원 지원

○ (**개선과제**) 동 사업을 통해 기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한 보수 또는 활용도 제고를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업그레이드 지원 (1회에 한함)

- 총 사업비의 50%, 최대 4천만원 지원

○ **(원산지증명시스템구축과제)** 원산지증명(확인)시스템 도입을 원하는 수출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연계모듈 구축 및 지원

< 원산지증명(확인)시스템 구축 지원유형 >

지원유형	지원내용	지원조건
서버 일체형	1인용 PC형의 다중 사용자용 **서버버전으로의 업그레이드형 구축 지원**	최대 700만원 (50% 이내)
정보시스템 연계형	ERP 등 정보시스템과 원산지관리시스템 **연계모듈 구축 지원**	최대 1,000만원 (50% 이내)

※ 신규/개선과제와 원산지증명시스템구축과제 중복 신청 가능

4.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단,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신규/개선과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등록하고 생산·제조 관련 설비를 보유한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이거나, 사업장 면적이 500m^2미만인 기업은 공장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 가능

5. 지원 규모(예산) : 80억원, 150개 기업 내외

6. 지원절차

①신청·접수 → ②현장평가 → ③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④심사평가 → ⑤원가계산 → ⑥참여기업 선정 → ⑦협약체결 및 사업착수

* 원산지증명시스템구축과제는 현장평가 생략

7.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15. 1. 19(월) 09:00 ~ **2. 16(월) 18:00**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관련양식은 http://it.smba.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청방법 :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 및 과제를 명시하여, 정보화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http://it.smba.go.kr)

8. 우대지원 대상 및 가점 내용

① 정보화경영체제(IMS) 인증기업 (5점)

② 경영혁신형중소기업(MAIN-BIZ),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벤처인증기업, 싱글PPM인증기업, 글로벌강소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방산(물자)업체, 기술사관육성사업단 협약기업, 개인정보보호 인증(PIPL)기업 (각 2점)

③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뿌리산업'(주조,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용접 산업) 인증기업 (5점)

* 일반 중소기업은 최대 5점, 뿌리기업은 최대 10점(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만 해당)

9. 지원 제외대상

※ 개별 기업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영위기업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중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문란자로 관리중인 중소기업

* 금융질서문란자란 신용정보관리규약(전국은행연합회)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부도 관련인, 금융질서 문란, 화의·법정관리·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Ⅲ.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 지원 사업

1. 사업 개요

○ 중소기업의 보안인프라에 대한 정밀진단 및 설계 후 기업환경에 적합한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을 통한 기술유출 방지

2. 지원 내용

○ 네트워크, 서버 및 PC보안, 문서보안 등 기술적 대응 솔루션과 출입관리 등 물리적 대응 시스템구축 지원

3. 지원 조건

○ 총 사업비의 50%, 최대 4천만원 지원

4.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기술유출 피해 기업 우대(기술유출 피해 여부는 중소기업기술보호상담센터 상담 보고서, 경찰청 수사기록, 법원 판결문 등을 통해 증빙)

5. 지원 규모(예산) : 14.9억원, 37개 기업 내외

※ 6. 지원절차, 7. 신청기간, 8. 우대지원 대상 및 가점 내용, 9. 지원 제외대상은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과 동일함

Ⅳ. 지원기관(IT기업 등) 풀(POOL) 등록

※ 지원기관은 IT기업(생산현장디지털화, 원산지증명시스템구축) 및 보안솔루션 구축 가능 기업(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을 의미

1. 지원기관 풀(Pool) 등록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인 력	○ 중급기술자 이상 전문인력 5인(고급기술자 2인 포함) 이상 보유 * 인력은 상시근로자 기준(고용보험 가입 기준) * 사업 참여인력은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제출(career.sw.or.kr 참조) 단, 기존 참여인력 중 등급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 * SW기술자 전문인력 확인은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2014년도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 내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 준용
인프라	○ (생산현장디지털화) 생산설비정보화 솔루션(POP, MES 등)을 보유하고 해당분야의 개발실적과 H/W, N/W 등의 정보화 인프라 공급능력을 보유한 기업 ○ (원산지증명시스템 구축지원) 원산지증명 솔루션(전자무역솔루션, 원산지증명시스템, CRM, ERP 등)을 보유하고, 해당분야의 개발실적과 H/W 등의 정보화 인프라 공급능력을 보유한 기업 ○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 보안솔루션(네트워크, 서버, PC보안 및 문서보안 등)을 보유하고, 해당분야의 개발실적과 물리적·기술적 보안솔루션 공급능력을 보유한 기업 * 보안적합성 검증(CC인증)을 받은 보안솔루션 보유기업 우대
사 업 실 적	○ (공통) 최근 3년 이내에 5천만원 이상(단일사업)의 관련분야 정보시스템 개발실적 각 2건과 500만원 이상 유지보수 실적(1년 이상 기간) 각 1건 이상 보유 기업 * 중소기업(수요기업) 확인 실적증명서 제출 * 사업 실적은 사업신청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며, 솔루션 실적은 불인정 (단,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 지원사업은 예외적으로 솔루션 실적 인정)
기 타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기관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제출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평가 결과 B-등급 이상(유효기간은 사업공고일 기준) 또는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이하인 기업 * 신용평가기관 :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한국기업평가 * 2015년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융자제한 부채비율 : 303.9% ○ 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문란자로 규제받고 있지 아니하는 기업 * 금융질서문란자 : 신용정보관리규약(전국은행연합회)에 따라 연체, 대외 변제·대지급·부도 관련인, 금융질서 문란, 화의·법정관리·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기업 * 지원기관(IT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

2. 지원기관 풀(Pool) 신청

○ 해당사업 :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신규/개선과제 및 원산지중명시스템 구축과제),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15. 1. 19(월) 09:00 ~ **2. 16(월) 18:00**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인력, 인프라, 사업실적, 기타요건 증빙)

* 관련양식은 http://it.smba.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청방법 : 정보화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http://it.smba.go.kr)

3. 지원기관 관리

○ 지원기관 풀 등록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한하여 2015년 정보화사업 지원기관 풀에 등록

- 등록된 지원기관은 참여기업과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 기업만 사업 수행

○ 사업수행 지원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도, 수행실적, 참여기업의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일정 점수 미만의 지원기관에 대하여는 차년도 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 예정

Ⅴ. 권역별 순회설명회 일정

일 시		장 소
2015. 1. 27(화)	14:00	**(서울)** 키콕스벤처센터 대회의실
2015. 1. 29(목)	14:00	**(경기)**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
2015. 1. 30(금)	14:00	**(대전)**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
2015. 2. 3(화)	14:00	**(부산)**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
2015. 2. 5(목)	14:00	**(대구)**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
2015. 2. 6(금)	14:00	**(광주)** KTX 광주역 3층 무등산실

Ⅵ. 문의 및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중소기업청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컨텍센터 1644-1736 경영혁신플랫폼 : 042-388-0317, 02-2124-3233 생산현장디지털화 : 042-388-0314~16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 : 042-388-0318

중소기업청
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TIPA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Korea Technology and Information Promotion Agency for SMEs

[붙임1] 경영혁신플랫폼 특화형솔루션 개발과제 신청서

2015년도 「경영혁신플랫폼 기반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
특화형솔루션 개발과제 신청서

과제명 (솔루션명)				
과제속성 (다중선택)	☐ 법정의무 준수(수행)를 위한 기능 포함 ☐ 협단체와 회원사간 필수 업무처리 기능 포함 ☐ 협단체·회원사 외 외부기관 처리 기능 또는 외부시스템 연동 포함			
신청기관	협단체명			
	주 소			
	설립년월일		상근임직원수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일반전화번호		팩스번호	
	회 원 수		주요업종	
대표자	성 명		전화번호	
과제 책임자	성 명		직 위	
	휴대전화번호		일반전화번호	
	이 메 일		팩스번호	
전기확정 재무상태 (백만원)	수 입		결 산	
	자본총계		당기손익	

상기와 같이 2015년도 「경영혁신플랫폼지원 기반 중소기업정보화 지원사업」의 '특화형솔루션' 개발과제를 신청하고자 과제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무효 및 지원중단, 개발비 환수 등에 이의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5년 월 일

_____ 협·단체 대표_____(인)

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

※ 신청서 표지는 협단체 대표자 날인 후 스캔하여 송부

Ⅰ 조합(단체) 소개

1. 협단체 연혁 및 설립목적

○
-
  ▪
○
-
  ▪

주) 협단체의 주요연혁 및 설립목적 등을 기재

2. 협단체 현황

가. 소속 회원사 현황

기업 현황(국내 전체)			소속 회원사 현황		
기업수	종업원수 (백명)	시장규모 (억원)	회원사 수	종업원수 (백명)	매출액 (억원)

주) 소속 회원사의 전체 매출액, 종업원수 등의 현황을 국내 전체와 비교하여 기재

나. 협·단체의 사업 내용

○
-
  ▪
○
-
  ▪

주) 협단체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 내용 및 역할, 예산 등을 기재

3. 내부용 및 회원사 지원용 정보시스템 보유현황

가. 정보시스템 보유 현황

시스템명_1	용도			
	H/W구성			
	S/W구성			
	구축년도		구축금액(원)	
	고도화년도		고도화금액(원)	
	운영여부		이용회원수	
	운영인력수		운영예산(원)	
	활용효과			
시스템명_2	용도			
	H/W구성			
	S/W구성			
	구축년도		구축금액(원)	
	고도화년도		고도화금액(원)	
	운영여부		이용회원수	
	운영인력수		운영예산(원)	
	활용효과			

주) 협단체에서 보유한 정보시스템(내부용, 회원사 지원용)의 현황을 기재

나. 신규 도입 또는 개선 계획

주) 위 "가. 정보시스템 보유 현황"에 기재한 시스템 중 장비확충, 기능보강 등의 개선 계획과 내부용 및 회원사 지원용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 계획 기재

Ⅱ 신청과제(솔루션) 관련 내용

1. 추진 배경

○
- ▪
○
- ▪

주) 신청과제(업무용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현재 법률 또는 행정규칙 관련 의무사항, 업무처리 현황, 문제점 등을 상세히 기재

2. 추진 목표

○
- ▪
○
- ▪

주) 신청과제(업무용 소프트웨어)의 목표, 효과 등을 요약하여 기재

3. 사전 준비현황

○
- ▪
○
- ▪

주) 신청과제(업무용 소프트웨어)의 타당성, 활용성, 효율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협의 등의 사전 검토활동을 상세하게 기재

4. 신청과제 개요

○
- ▪
○
- ▪

주) 목표시스템의 개념(도), 정의, 신청서 '과제속성'의 세부내용 등을 기재

5. 신청과제 업무절차

단위업무명	순번	업무절차명	수행주체	업무내용

주) 신청과제(업무용 소프트웨어)의 업무절차별 수행주체, 수행내용 등을 상세하게 기재

6. 신청과제 세부 요구사항

○
- ▪
○
- ▪

주) 신청과제(업무용 소프트웨어)의 세부 기능요건, 필수요소 등을 상세하게 기재
업무처리 절차에서 외부기관 및 시스템과의 연동이 필요한 경우 세부내용 기재

7. 신청과제 메뉴(기능) 구성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권한관리	*사용자 권한관리*	*사용자별 권한(관리자, 일반사용자) 관리*
	사용자 메뉴관리	*사용자별 메뉴 사용 권한 관리*
영업관리	*거래처 관리*	*거래처 조회, 등록, 수정, 삭제*
	견적서 발급	*견적서 발급 관리*

주) 목표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메뉴(기능)를 상세하게 기재

8. 참여주체별 업무분장

주) 신청과제(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성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협단체, 회원사 등의 역할을 기재. 특히, 요구정의, 테스트 등에 참여할 5개 이상의 회원사 반드시 기재

9. 개발단계별 활동계획

개발단계	참여주체	활동계획
요구정의		
설계		
개발		
테스트		
검수		

주) 소프트웨어 개발단계인 요구사항정의, 설계, 개발, 테스트, 검수별로 "8.참여주체별 업무분장"에서 정한 참여주체별로 활동계획을 상세하게 기재

10. 기대 효과

구 분	기대치(단위)	산출 근거	비고
1. 인건비 절감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추가 인력의 절감
2. 시스템 구축비 절감			HW/SW/정보시스템 운영인력 비용 감소분
3. 시스템 유지보수비 절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부담 감소에 따른 비용절감분
4. 생산성 증가			업무처리시간 단축 등에 따른 생산성 증가
5. 매출액 증가			솔루션 활용을 통한 매출액 증가
6. 업무처리비용 절감			솔루션 활용을 통해 기존 고정비용 감소

주) 신청과제(업무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해 회원사의 경제적 성과, 생산성 향상 등의 기대 효과를 기재(정량적 내용 중심으로 기재)

Ⅲ 신청과제(솔루션) 보급확산 및 발전전략 등

1. 보급확산 목표수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솔루션 이용기업 목표수(개사)					
보급률(목표수/전체 회원수)	%	%	%	%	%

주) 개발된 특화형솔루션의 보급확산 목표수 기재(소속 회원사 대상)

2. 보급확산 계획

○
- ▪

○
- ▪

주) 개발된 특화형솔루션의 보급확산을 위한 협·단체의 주요 활동계획(홍보, 교육 등)을 상세하게 기재

3. 중장기 발전 및 활용전략

○
- ▪

○
- ▪

주) 개발된 특화형솔루션에 대하여 중장기 관점에서의 발전(개선) 및 활용 계획 등을 상세하게 기재

[붙임2] 경영혁신플랫폼 특화형솔루션 선정평가표

특화형솔루션 신청과제 선정평가표

신청기관명			
과제명			
평가일자		평가위원	(인)

□ 평가점수

평 가 항 목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지원의 필요성 (55)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15	12	9	6	3
	개발의 시급성(법정의무 등)	15	12	9	6	3
	업무효율성 개선 및 표준화 정착 수준	10	8	6	4	2
	협단체·회원사·관계기관 등과의 협업 정도	10	8	6	4	2
	상용솔루션과의 차별성	5	4	3	2	1
계획의 충실성 (30)	사전 준비의 구체성 및 명확성	15	12	9	6	3
	보급확산 계획의 적정성	5	4	3	2	1
	추진조직의 지원계획 및 참여의지	10	8	6	4	2
파급 효과 (15)	회원사 규모 및 회원사 활용성	10	8	6	4	2
	지속활용 가능성 및 확산성	5	4	3	2	1
총 점						

□ 평가의견